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 1. 개정의 사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적용범위 및 제출연한 초과자 자격 재부여에 따른 등록관련 추가 명시 등 학칙의 현실화를 위함
- 2. 개정의 내용(주요골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적용범위 및 제출연한 초과자 자격 재부여에 따른 등록 등 개정
- 3. 개정(안) 신구대조표

제 정 : 2007. 11. 1 개 정 : 2009. 4. 1 개 정 : 2013. 1. 1 개 정 : 2014. 2. 1 개 정 : 2017. 4. 1 개 정 : 2018. 6. 1 개 정 : 2019. 4. 8 개 정 : 2019. 7. 8 개 정 : 2020. 3. 1		
현행	개정(안)	사유
-중략-	-중략-	
제4장 등록, 수강신청,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	제4장 등록, 수강신청,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조(등록) ① 좌동	
출하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등록학기의 횟수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석사과정 : 4학기 2. 박사과정 : 6학기	③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을 하거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하여 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재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한 초과 삭제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3	⑤ 좌동	
개월까지 연장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		
-중략-	-중략-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학위청구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시 논문심사료를 징		

수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은 석사과정은 수료후 5년 이내, 박사과정은 수료 ② 좌동 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5조의 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좌동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 과교수회의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 험 미응시자를 포함하여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 (신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등 록하고 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 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 ③ 위 2항의 취득학점은 총졸업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수료 후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으로 별도로 기재한다. (신설)
-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후 제출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2년, 박사3년 이내로 한다. (신설)

-중략-

제46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① 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제46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① 좌동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다.

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③ 좌동 다.(신설)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① 좌동 초과한 자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미응시자를 포함하여 학위청구논문 제 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는 해당학기부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등록하여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응시 포함 논문지도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 강하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야 하며,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신설) 의 33%)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중략-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 2. (경과조치) ①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 은 석사 2년, 박사 2년으로 정한다.
- 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 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

-중략-

②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 ②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학기당 수업료의 등록금액 구체적 명시 15%)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② 1항의 등록생은 제14조 4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납부하여 ② **1항의 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학기당 수업료** 등록금액 구체적 명시 논문등록내용 추가

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내용구분 다.<개정>

-중략-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은 석사 2년, 박사 2년으로 정한다.

박사 3년으로 정한다.

이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칟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46조 ②)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전공명칭변경)①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은 지속가능발전불교학 전공(SDB)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②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은 재적생 및 수료생이 🔘 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은 재적생 및 수료생이 졸업할때까지 존속한다.
- ③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재적 ③이 학칙개정 이전의 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재적 을 유지하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과 같은 학기에 재적하게 될 경우 지속│을 유지하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과 같은 학기에 재적하게 될 경우 지속 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 ④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④지속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적용한다.
- 나.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2항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①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2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2019년 4월 8일 ①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2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2019년 4월 8일 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초과한 자는 제14조(등록).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제 46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 출연한초과 등록생)을 적용한다.
- 라.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박사 3년으로 정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제51조(구성 및 소집)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③ 이 개정 학칙 제51조(구성 및 소집)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46조 ②)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가. (전공명칭변경)①불교사전공 및 응용불교학전공은 지속가능발전불교학 전공(SDB)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졸업할때까지 존속한다.

- 가능발전불교학전공(SDB)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 적용하다.
- 나.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2항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2019년 4월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② 2019년 4월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14조(등록),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제 46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 제46조의 3(학위청구논문 제 출연한초과 등록생)을 적용한다.
 - 라.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가.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2항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은 2019년 4월 8 일자 학칙 개정 이후 입학생, 학칙 개정 이전 재학생, 수료생을 포함하여 적 전용기준 명시 용한다.

- 나.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2항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46조 의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을 적용한다.
-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의거하여 시 행한 것으로 본다